

2019회계연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1. 총괄

-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제8조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주요 재원¹⁾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등으로 2019년까지 총 2,028억 5천 7백만원의 재원이 운용되었음.

〈연차별 주거지원계정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출연금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기타
계	202,857	77,200	6,102	119,555
2002-2010	35,848	27,000	3,072	5,776
2011	1,596	-	481	1,115
2012	22,480	20,000	462	2,018
2013	4,708	-	644	4,064
2014	31,709	6,000	356	25,353
2015	10,691	6,000	328	4,363
2016	20,311	3,400	260	16,651
2017	33,630	4,450	231	28,949
2018	23,841	4,500	188	19,153
2019	18,043	5,850	80	12,113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2019년 기금운용현황

○ 2019회계연도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수입은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 79억 7천6백만원과 당해연도에 조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5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자포함, 40억 9천7백만원), 이자수입(8천만원), 기타수입(4천만원)을 합산한 총 180억 4천3백만원으로, '19년도 순조성액은 100억 6천6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19년도 총 조성액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순조성액					
	예치금회수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이자포함)	이자수입	기타수입
18,043	7,976	10,066	5,850	4,097	-	80	40

※ 조성내역 : 일반회계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환수 등)

- 기금지출(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비 73억 2천5백만원과 융자성사업비 68억 1천5백만원으로 총 141억 4천1백만원이 사용되었고,

(단위: 백만원)

'19년도 지출(사용액) 계	사업비			예치금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8,043	14,141	7,325	6,815	3,901

- 순조성액(100억 6천6백만원)보다 사용액(141억 4천1백만원)이 더 많아 2019년 순조성·사용 내역(40억 7천4백만원)이 마이너스로 발생됨. 여기에 '18년도말 조성액 79억 7천6백만원을 더한 '19년도말 조성액은 39억 1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18년도말 조성액 (a)	'19년도 순조성·사용 내역			'19년도말 조성액 (e = a + b)
	계(b = c - d)	순 조성액(c)	사용액(d)	
7,976	△4,074	10,066	14,141	3,901

○ 수입내역

- 2019년도 수입은 180억 4천3백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223억 2천6백만원보다 42억 8천3백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당초 31억 8천8백만원으로 계획했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금 회수수입이 2019회계연도 기한 내 회수되지 않은 것과,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회수액이 당초계획보다 9억 4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당초계획	수입액	증감	비고
계	22,326	18,043	△ 4,283	
일반회계 전입금	5,850	5,850	-	일반회계 전입
민간용자금회수(이자포함)	3,188	0	△ 3,18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SH공사 용자금 회수
통화금융기관용자금회수수입	5,000	4,096	△ 904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	80	△ 56	은행 예금 이자
기타 그 외 수입	174	39	△ 135	
예치금 회수	7,976	7,976	-	

- 참고로, 저소득층 임대보증 용자금 회수수입은 정산 과정에서 업무처리 지체²⁾가 발생하여 2019년 결산 마감시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2020년 세입조치³⁾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인 바,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투자기관의 관리·감독 등 기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SH공사에서 내부 인사이동 등으로 서울시로 제출이 지체되었고('20.1.10제출), 이자산정 및 사업비 최종정산 후 세입조치가 '20.2.12일에 이루어져, 2019 회계연도 결산 마감 시한인 '20.1.20을 넘김.

3) 2020회계연도 세입액은 용자금 회수 2,534백만원, 이자 227백만원임.

○ 지출내역

- 2018년도 기금 지출액은 180억 4천3백만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223억 2천6백만원보다 42억 8천3백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이 당초 계획한 50억원보다 10억 8천1백만원 감소하였고,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 당초 50억원 지출계획에 비해 실제 38억 1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11억 8천4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당초계획	지출액	증감	비고(증감사유)
계	22,326	18,043	△ 4,282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5,000	3,918	△ 1,081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복지센터 운영	4,003	3,407	△ 594	중앙 및 지역센터 25개소 운영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	3,000	3,000	-	SH공사 용자금 대출 (가구당 1,000만원이하, 328가구 지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5,000	3,815	△ 1,184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32가구 지원
여유자금 예치	5,323	3,901	△ 1,421	

※ 사업별 지출 결산내역 (예치금 및 기본경비 제외)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집 행 내 역	
		지출액	실적
지 출 총 계		14,140	-
비용자성사업비 합계		7,325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A)	3,918	월 5,797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B)	3,407	26개소
용자성사업비 합계		6,815	360가구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 (C)	3,815	32가구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 (D)	3,000	328가구

3. 사업별 검토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내 역(2019)		집 행 내 역(2018)		집 행 내 역(2017)	
	지출액	실적	지출액	실적	지출액	실적
지출 총계	14,140		15,865		21,183	
비용자성사업비 합계	7,325		9,403		7,614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A)	3,918	4,776가구	6,574	6,975가구	6,659	10,270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B)	3,407	26개소	2,829	26개소	771	10개소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2018년부터 폐지	-		-		31	78가구
용자성사업비 합계	6,815		6,462		13,569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C)	3,815	32가구	3,462	28가구	10,569	149가구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D)	3,000	328가구	3,000	338가구	3,000	337가구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A)사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4)’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지원가구가 2,199가구 감소(‘18년 6,975→ ’18년 4,776가구)함에 따라 지출액도 3천5백만원 감소하였음.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지원가구	지원 금액(천원)	비 고
2019	4,776	3,918	
2018	6,975	6,574	
2017	10,270	6,659	
2016	10,030	5,728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5), 주거급여 신청 기준이 완

4) 중위소득 60% 이하인 민간임대 월세주택 거주 저소득서민에게 월세의 일부(가구원수에 따라 5만원~7만5천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

5) 고시원(준주택)으로 지원대상 확대 시 추가 수급대상이 약 11,154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9년 주택 및 고시원(준주택) 거주가구 총 신청 가구 수는 4,776가구에 불과함

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기준과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격차가 크지 않아 주택바우처 지원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주관부서에서는 주거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적 환경변화에 부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⁶⁾.

<주거급여 개정 사항 비교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3% (1인 기준 719,005원)	기준중위소득 44% (1인 기준 751,084원)	기준중위소득 45% (1인 기준 790,737원)
지원 수준 (기준 임대료/차등지급)	최대 213,000원 (1인 기준)	최대 233,000원 (1인 기준)	최대 266,000원 (1인 기준)
기본재산액*	54백만원	54백만원	69백만원

* 기본 재산액 : 수급자가 사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아 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D)⁷⁾ 사업은 지원대상 328가구에 대하여 30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거두었음.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용자사업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천원)	지원가구	지원 금액(천원)	집행률
2019	3,000	328	3,007	100.2%
2018	3,000	338	2,985	99.5%
2017	3,000	337	2,983	99.4%
2016	2,700	272	2,486	92.1%
2015	2,000	131	1,232	61.6%
2014	2,500	253	2,148	85.9%

- 주거복지센터 운영(B)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 주택정책과-4530, 2019.3.11.수립, 시행: 7월)

- 6)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정책연구를 수행 중임(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4.20 ~ '20.11.19.)
- 7)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의 70%(상한액 1천만원) 까지 지원·용자해 주는 사업임.

2018년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18.4) 하였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도 기존 10개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운영 중인 상황임.

총 26개 주거복지센터 중 교부금액 반납율이 높은 곳은 총 5개소로, 노원·마포·관악·강남 지역센터에서는 퇴사자 관련된 인건비 집행잔액(또는 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앙센터에서는 교육비 부문에서 자체 인력 활용 등으로 예산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⁸⁾.

<주거복지지원센터별 집행내역>

(단위: 원)

센터명	'19년 교부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퇴직적립금 반납	반납액 (원단위 절사)
계	3,387,670,010	3,323,591,822	64,078,188	609,275	3,548,620	68,236,083
중 앙	695,733,100	675,037,211	20,695,889	172,208		20,868,097
종 로	104,699,900	104,699,900	0	17,171		17,171
중 구	104,700,000	104,620,000	80,000	17,227		97,227
용 산	104,700,000	104,656,770	43,230	23,060		66,290
성 동	112,963,030	112,926,298	36,732	21,264		57,996
광 진	104,694,940	104,674,728	20,212	20,497		40,709
동대문	103,106,000	103,065,999	40,001	19,283		59,284
중 랑	104,512,720	104,508,884	3,836	17,155		20,991
성 북	113,090,200	113,090,010	190	15,721		15,911
강 북	113,200,000	113,200,000	0	12,960		12,960
도 봉	104,700,000	104,700,000	0	17,535		17,535
노 원	112,971,380	97,163,350	15,808,030	20,280		15,828,310
은 평	112,106,230	111,968,382	137,848	9,406		147,254
서대문	113,002,000	112,993,507	8,493	15,861		24,354
마 포	105,783,240	90,457,110	15,326,130	19,187		15,345,317
양 천	104,700,000	104,675,000	25,000	22,035		47,035

- 8) 노원·마포 : 각 2명 중 1명이 퇴직(3~4개월 공석)
 관악·강남 : 퇴직자 근무년수 미달(1년 미만)로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적립금 반납)
 중 앙 : 내부강사 활용(교육비 미집행), 계약 수의시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부가가치세 공제금액 반영으로 부가가치세 잔액 발생 등

강 서	104,700,000	104,700,000	0	13,681		13,681
구 로	103,731,530	103,731,530	0	13,020		13,020
금 천	113,118,400	113,118,398	2	16,361		16,363
영등포	108,021,070	108,021,070	0	14,146		14,146
동 작	104,579,980	104,579,980	0	19,102		19,102
관 약	112,317,980	112,317,980	0	19,076	1,880,630	1,899,706
서 초	104,700,000	104,700,000	0	14,854		14,854
강 남	103,938,310	92,196,348	11,741,962	20,927	1,667,990	13,430,879
송 파	113,200,000	113,195,550	4,450	15,087		19,537
강 동	104,700,000	104,593,817	106,183	22,171		128,354

-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단기자금)(C)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 도입된 이래, 2016년 제도개선으로 실적이 급증했다가 2017년도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음.

이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소형(59㎡ 이하)으로만 공급됨에 따라 보증금(8천만원 이하)과 계약금(1천 6백만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최근 4년간 대출 실행 건수와 금액 현황>

구 분	편성액	대출 건수	대출 금액
2020(~4월)	60억	4건	4억5천3백
2019	50억	32건	38억
2018	145억원	29건	35억원
2017	145억원	149건	98억원
2016	150억원	203건	121억원

<2015~2019년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신규+기존)>

〈단위 : 호〉

면적	2019	2018	2017	2016	2015
계	436	31	245	2,056	1,519
49㎡ 이하	109	11	0	79	261
59㎡ 이하	209	0	229	1,442	1,212
84㎡ 이하	116	20	16	535	40
84㎡ 초과 114㎡ 이하	2	0	0	0	6

전세보증금순환기금은 당초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발할 때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에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당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19년도 지출액(141억 4천1백만원)이 ’19년도 순조성액(100억 6천6백만원)을 초과하여 기존 조성액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한 수입·지출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비용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유형의 다각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
연락처	02-2180-8208
이메일	urbanth@seoul.go.kr

〔붙임1〕 주거복지센터 기금 지출 현황 및 실적

○ 주거복지센터 교부 및 집행

(단위 : 원)

센터명	교부금액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3,387,670,010	2,128,365,886	219,064,303	1,040,240,350
중 앙	695,733,100	221,995,464	49,522,936	424,214,700
중 로	104,699,900	75,478,960	6,456,760	22,764,180
중 구	104,700,000	72,206,180	9,475,560	23,018,260
용 산	104,700,000	72,206,180	9,461,860	23,031,960
성 동	112,963,030	72,206,178	9,976,412	30,780,440
광 진	104,694,940	71,686,368	7,683,600	25,325,000
동대문	103,106,000	72,206,180	9,907,779	20,992,041
중 랑	104,512,720	72,206,180	9,820,640	22,485,900
성 북	113,090,200	84,753,700	6,208,500	22,128,000
강 북	113,200,000	82,683,410	3,486,880	27,029,710
도 봉	104,700,000	72,206,060	9,318,980	23,174,960
노 원	112,971,380	84,753,700	4,046,550	24,171,130
은 평	112,106,230	84,898,990	2,827,490	24,379,750
서대문	113,002,000	82,423,612	2,602,940	27,975,448
마 포	105,783,240	74,230,200	7,406,350	24,146,690
양 천	104,700,000	72,205,680	9,475,500	23,018,820
강 서	104,700,000	75,517,030	7,002,970	22,180,000
구 로	103,731,530	74,606,640	6,829,090	22,295,800
금 천	113,118,400	82,934,400	4,364,100	25,819,900
영등포	108,021,070	79,479,370	5,680,300	22,861,400
동 작	104,579,980	74,574,013	2,971,566	27,034,401
관 약	112,317,980	79,624,900	3,637,580	29,055,500
서 초	104,700,000	72,205,680	9,436,370	23,057,950
강 남	103,938,310	66,341,751	6,812,060	30,785,000
송 파	113,200,000	82,528,880	5,244,460	25,426,660
강 동	104,700,000	72,206,180	9,407,070	23,086,750

(단위 : 원)

센터명	집행금액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3,323,591,822	2,092,036,698	220,342,771	1,011,212,353
중 앙	675,037,211	217,392,737	52,340,843	405,303,631
중 로	104,699,900	75,478,960	6,456,760	22,764,180
중 구	104,620,000	72,206,180	9,395,560	23,018,260
용 산	104,656,770	72,206,180	9,428,630	23,021,960
성 동	112,926,298	72,206,178	9,939,680	30,780,440
광 진	104,674,728	71,686,368	7,663,440	25,324,920
동대문	103,065,999	72,206,180	9,867,779	20,992,040
중 랑	104,508,884	72,206,180	9,820,634	22,482,070
성 북	113,090,010	84,753,700	6,208,310	22,128,000
강 북	113,200,000	82,683,410	3,486,880	27,029,710
도 봉	104,700,000	72,206,060	9,318,980	23,174,960
노 원	97,163,350	68,945,670	4,046,550	24,171,130
은 평	111,968,382	84,898,920	2,753,882	24,315,580
서대문	112,993,507	82,423,276	2,602,940	27,967,291
마 포	90,457,110	58,904,070	7,406,350	24,146,690
양 천	104,675,000	72,205,680	9,450,500	23,018,820
강 서	104,700,000	75,517,030	7,002,970	22,180,000
구 로	103,731,530	74,606,640	6,829,090	22,295,800
금 천	113,118,398	82,934,398	4,364,100	25,819,900
영등포	108,021,070	79,479,370	5,680,300	22,861,400
동 작	104,579,980	74,574,013	2,971,566	27,034,401
관 악	112,317,980	79,624,900	3,637,580	29,055,500
서 초	104,700,000	72,205,680	9,436,370	23,057,950
강 남	92,196,348	65,749,858	5,598,080	20,848,410
송 파	113,195,550	82,528,880	5,240,010	25,426,660
강 동	104,593,817	72,206,180	9,394,987	22,992,650

(단위 : 원)

센터명	집행잔액 및 이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자 및 기타
계	64,515,283	31,725,960	1,539,439	30,812,817	609,275
중 앙	20,695,889	0	0	20,695,889	172,208
종 로	17,171	0	0	0	17,171
중 구	97,227	0	80,000	0	17,227
용 산	66,290	0	33,230	10,000	23,060
성 동	57,996	0	36,732	0	21,264
광 진	40,737	0	20,160	80	20,497
동대문	59,284	0	40,000	1	19,283
중 량	20,991	0	6	3,830	17,155
성 북	15,911	0	190	0	15,721
강 북	12,960	0	0	0	12,960
도 봉	17,535	0	0	0	17,535
노 원	15,828,310	15,808,030	0	0	20,280
은 평	147,254	70	73,608	64,170	9,406
서대문	24,354	336	0	8,157	15,861
마 포	15,345,317	15,326,130	0	0	19,187
양 천	47,035	0	25,000	0	22,035
강 서	13,681	0	0	0	13,681
구 로	13,020	0	0	0	13,020
금 천	16,363	2	0	0	16,361
영등포	14,146	0	0	0	14,146
동 작	19,102	0	0	0	19,102
관 악	19,076	0	0	0	19,076
서 초	14,854	0	0	0	14,854
강 남	11,762,889	591,392	1,213,980	9,936,590	20,927
송 파	19,537	0	4,450	0	15,087
강 동	128,354	0	12,083	94,100	22,171

○ (주요실적 1) 주거복지 상담 : 총 50,998건 / 24,403명

구 분	상담실적 (건)	대상인원 (명)	상담 내용(건)				
			주거비 (간접 월세, 보증금 등)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계	50,998	24,403	9,208	32,326	1,057	806	9,134
종 로	1,494	600	437	695	45	24	293
중 구	2,729	1,472	239	2,195	35	38	222
용 산	1,850	988	195	1,496	4	14	141
성 동	3,996	1,515	873	2,928	20	29	146
광 진	2,074	1,630	865	1,055	99	97	232
동대문	3,430	1,174	232	2,430	37	57	674
중 랑	1,884	1,169	382	1,369	19	3	111
성 북	2,988	1,184	578	555	174	31	2,688
강 북	936	353	302	372	27	40	195
도 봉	2,257	1,463	325	1,771	8	10	143
노 원	1,760	391	211	1,413	14	23	99
은 평	819	424	133	289	4	9	384
서대문	1,569	1,067	334	525	97	30	583
마 포	613	383	188	314	6	23	82
양 천	3,638	1,919	639	3,074	16	20	110
강 서	1,171	540	300	511	9	30	321
구 로	1,672	490	443	882	12	23	312
금 천	2,606	654	601	1,435	35	86	449
영등포	1,522	399	713	182	41	41	545
동 작	2,209	772	133	1,887	37	45	107
관 악	1,901	886	319	1,079	9	19	475
서 초	3,283	2,031	202	2,905	12	6	158
강 남	777	491	189	347	108	79	54
송 파	1,469	967	261	1,089	60	9	50
강 동	2,351	1,441	114	1,528	129	20	560

※ 기타 : 민간임대주택 연계, 임대차, 지역복지자원 문의, 전세보증금 대출 문의 등

○ (주요실적 2) 긴급주거비·연료비 등 지원 : 1,045,513천원, 4,513건

▶ 시 사업비 지원내역 : 527,316천원 / 1,561건

▶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내역 : 518,197천원 /2,952건

구 분	시 사업비 지원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계	527,316	1,561	518,197	2,952
총 로	22,659	73	14,204	48
중 구	22,086	40	15,460	22
용 산	19,676	82	4,800	43
성 동	28,847	74	3,000	53
광 진	21,894	181	38,922	101
동대문	15,821	13	5,400	73
중 량	21,299	79	5,500	2
성 북	19,867	81	74,899	294
강 북	25,228	62	19,904	91
도 봉	20,770	86	10,432	23
노 원	23,328	19	11,000	17
은 평	20,350	28	28,844	128
서대문	20,496	134	29,173	220
마 포	21,216	51	7,500	27
양 천	19,686	52	25,721	111
강 서	19,640	52	28,636	138
구 로	18,699	47	35,117	84
금 천	16,824	32	41,218	161
영등포	20,847	36	12,056	29
동 작	25,770	27	28,000	800
관 약	26,499	50	12,023	142
서 초	20,973	28	6,564	26
강 남	16,703	25	31,825	201
송 파	16,642	28	17,948	92
강 동	21,496	181	10,051	26

▶ 세부지원내역

(단위 : 세대, 천원)

구 분	수혜가구	지원액(천원)	비 고
계	4,513	1,045,513	
긴급 월세/보증금 지원	583	615,798	
주거환경개선(집수리)	814	150,523	
긴급 연료지원	119	40,013	
기타(긴급물품, 현물 등)	2,997	239,179	특화사업포함

[붙임2]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용자지원 사업개요 및 실적

○ 사업비: 30억 원(10,000천 원 x 300가구)

○ 지원대상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9)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상한액: 1천만 원)
- 연이율 2%로 10년 간 균등분할 상환(연체료: 연 8.5%)

○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SH공사 임대부로 신청

○ 추진방법: SH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17. 6. 11.~'20. 6. 10.)

※ 사업비는 분기별 교부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매월 20일 정산)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예산액(천원)	지원가구	지원 금액(천원)	집행률(%)	비 고
2019	3,000,000	328	3,007,000	100.2	
2018	3,000,000	338	2,985,000	99.5	
2017	3,000,000	337	2,983,000	99.4	
2016	2,700,000	272	2,486,000	92.1	
2015	2,000,000	131	1,232,000	61.6	
2014	2,500,000	253	2,148,000	85.9	
2013	3,000,000	579	4,781,750	159.0	
2012	2,870,000	371	3,037,800	106	
2011	2,000,000	247	2,133,060	107	
2010	미정산, 예산 미교부	275	3,472,570	-	
2009		178	1,200,465		
2008		210	1,254,560		
2007		313	1,588,600		
2006		343	1,465,320		
2005	3,000,000	724	3,070,940	102	
2004	900,000	775	3,385,330	376	
2003	853,000	713	3,007,790	353	
2002	4,650,000	103	451,000	10	

9)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붙임3]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사업개요

○ 대출대상과 신청자격

- 계약금 대출
 - ▶ SH, L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 잔 금 대출
 - ▶ 민간(신)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이내 임대계약 체결자
 - ▶ SH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보증금 한도 없음)

○ 대출한도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계약금의 90%이내(최고한도 5천만원)
- 잔 금 대출 : (구)임차보증금 100%와 (신) 임차보증금 80%중 적은 금액(최고한도 1억8천만원)

○ 대출기간

- 계약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종료일(연장불가)
- 잔 금 대출 : 기존 임차주택 계약종료일까지가 원칙이나, 보증금 수령 지체시 최대 2년까지 가능(수시 임대차조사 하여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

○ 대출금리 및 수수료

- 고정금리 1.8%(중도상환 수수료 및 보증보험료 없음)

○ 지원방식 : 서울시 추천, 우리은행 대출(서울보증보험 보증)